

[INVOICE]

- 상품 : USD 10,000 • 선지급 : USD 1,000 • 할인 : USD 1,000
- 송장가치 : USD 8,000

(1), (2)중에서 큰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 신용장에서 부분금액을 송장 금액의 103%로 요구한다면 최소한 송장금액의 103%가 부분되어야 한다.
- 이러한 부분율이 없다면 CIF, CIP금액의 110%가 최소부분비율이 된다.
- 규정된 110%의 부분비율은 최소의 부분비율이기 때문에 110% 이상 부분해도 수리 된다. 하지만 유익한 점은 부분비율 앞에 정확하게(Exactly) 라는 유사한 문구가 있으면 정확히 110%만이 부분되어야 한다.
- CIF, CIP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결제 또는 매입금액 또는 송장상의 물품 총가액 중 큰 금액의 110%가 최소부분비율이 된다. (ISBP745 규정)

[Tip] 규정상 110%

-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더한 즉, 물품을 문제 없이 유통시킬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a. A bank is under no obligation to transfer a credit except to the extent and in the manner expressly consented to by that bank.

- a. 은행은 동 은행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및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이 무조건적으로 신용장을 양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신이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의무를 지님

1. Transferable credit
 - 신용장자체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 (transferable 이외에 유사표현인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이 사용되는 경우 양도가능신용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익자(제2수익자)가 이용하도록 양도 가능
2. Transferring bank
 - 신용장이 특정 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한 경우 : 특정은행, 개설은행이 신용장 양도 가능
 -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LC available with Any bank) : 개설은행에서 신용장 양도 가능
 - 신용장이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한 경우 개설은행을 제외한 은행이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3. Transferred credit :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해서 양도은행이 제2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
 - 양도된 신용장은 원 신용장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함(확인이 있는 경우 확인 포함)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내용(6가지)
 - ① the amount of the credit ② any unit price stated therein
 - ③ the expiry date ④ the period for presentation
 - ⑤ the latest shipment date or given period for shipment(①, ②, ③, ④, ⑤ 값씩 또는 단독 가능)
 - ⑥ 부보되어야 하는 백분율은 높일 수 있음.
 - Total Amount=USD 10,000, 부보비율을 CIF 금액의 110%를 요구하는 양도가능 신용장에서 단가를 감액하여 UDS 9,000을 양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부보비율은 원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증서시켜야 함 (USD 10,000 x110%/ USD 9,000 = 122.23% 이상 부보비율을 높여서 신용장을 양도 요청해야 한다.
the name of the applicant → the name of the first beneficiary로 대체 가능 (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 the name of the applicant 보일 것을 특정하여 요구 시 =>transferred credit에 원 applicant가 반영되어야 함)
 - [양도이유] : 1. 양도차역 2. 제1 수익자가 제품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구분	transfer 신용장 양도	assignment 대금 양도
양도의 형태	신용장 자체를 양도	대금을 받을 권리만 양도
“TRANSFERABLE” 기재 여부	반드시 L/C에 기재되어야만 허용	L/C에 기재되지 않아도 허용
적용 조항	UCP600 제38조 적용	UCP600 제39조 적용
수익자의 양도차익을 위한 서류교제	관련 있음	관련 없음

구분	선적 전 금융	선적 후 금융
정책금융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일반금융	무역어음(인수 및 할인)	수출환어음 매입

구분	종류	내용
용도별 금융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원제품 또는 원자재의제조·가공, 개발비 또는 용역을 수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원자재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신통장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원제품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제품을 내국신통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포괄 금융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불'(자·타사 수출실적 포함)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상기 제조·가공비, 수입·국산 원자재자금을 자금용도 구분 없이 취급하는 자금	

구분	신용장기준	실적기준
(1) 포괄금융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평균매매기준율×용자 비율	
(2) 생산자금	① 외화기득액×평균매매기준율×용자비율 ② 외화기득액 = [수출신용장 등의 용자대상 금액 (F.O.B기준) - 원자재수입액(C.I.F 기준) - 국내 원자재구 매액(내국 L/C의 외화금액)]	용자한도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 용자비율
(3) 원자재자금	수입여유금액, 수입대금 또는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 평균매매기준율×용자비율	좌동
(4) 완제품 구매자금	내국신용장어음의 외화금액×평균매매기준율×용자비율	좌동

발행신청인	수익자
-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구매 시 무역금융 수혜 -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 구매 시 물품공급 후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지급부담 경감 - 발행신청인은 내국신용장에서 정한 기일 내에 물품을 공급받으므로 수출 물품 확보에 원활화를 기함	-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실적은 무역 금융 및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수익자는 통 내국신용장을 용자대상증빙으로 하여 무역금융 수혜 가능 -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 회수 보장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 환급 - 내수거래에 비하여 물품공급대금의 조기 회수

보증의 법적 성질 및 보증인의 권리		보증	연대보증	청구보증
부종성(附從性)	주채무 부존재 및 소멸의 항변권	○	×	×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지권에 근거한 항변권	○	○	×
	주채무자의 상계권에 근거한 항변권	○	○	×
보충성(補充性)	최고·검색의 항변권	○	×	×

	ISP98	UCP600	URDG758
발행자의 자격	개설인(비금융기관, 또는 기업도 보증신용장 개설)	개설은행, 수익자	보증인
은행의 다른 지점의 지위	동일국가 다른 지점도 다른 은행으로 간주	다른 국가에 있는 동일은행 지점만 다른 은행으로 간주	
연장 또는 지급(Extend or Pay) 선택부 지급청구 규정	‘연장 또는 지급’을 규정(제3.09조)하고 있고 제시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7명 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또는 지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신용장에 따른 제시가 곧 지급청구이다.	제23조에서 ‘연장 또는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선택부 지급청구에 대하여 최장 30일까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할부지급 청구	각 서류의 제시는 독립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기초 거래(underlying transaction)는 통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지점 이후에서의 할부지급청구를 무효화하는 것은 거래를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제3.07조). 즉, 해당 할부지급청구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부분만 무효가 되고 차후의 할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할부사용(Installment drawing)에서 해당 할부부분을 할부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할부부분만 아니라 차후의 할부부분까지도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상업신용장에서 의미를 갖는다(제32조).	할부지급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비서류적 조건	두가지 요건, 즉 (i)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ii) 조건의 준수여부를 개설은행 자산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제14조 h항)	두가지 요건, 즉 (i)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ii)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개설은행 자산의 기록 또는 활동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서류적 조건으로 본다.

구분	서류심사기간	서류심사기간 기산일
UCP600	서류접수 다음 영업일부터 최장 5영업일	휴일도 서류접수일로 인정(ICC Option R265)
ISP98	제시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 3영업일 이내 : 비합리적이지 아니한(not unreasonable) • 7영업일 경과 : 비합리적(unreasonable)	영업일만 서류접수일로 인정
URDG758	서류제시일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관련 규정 없음

▶ 시험시간 : 13:00 ~ 15:00

▶ 합격자발표 : 4월 5일(금)

외환전문역, 유통관리사2급,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수강 시 정가대비 50% 할인

 이패스코리아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 문의등록에 응시내역을 남겨주세요.

- 1,2과목 외환실무내용과 국제무역사 내용은 연관성 ↑

- 집에서 편안하게 보는 온라인 시험

- 응시생이벤트로 50% 할인 적용

- 합격예감 교재 포함된 구성

▶ [무역트리플] 국무사 + 무역영어 + 외환2종

수강기간 2년, 수강료 40%할인(318,000원),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

- ▶ [무역더블] 국제무역사 + 무역영어

수강기간 1년, 수강료 40%할인(210,000원),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

- ▶ [무역더블] 보세사 + 원산지관리사

수강기간 1년, 수강료 55%할인(399,000원), 이패스 제작교재 포함

- ▶ [무역더블] 유통관리사2급 + 물류관리사 (취업3종 강의 무료)

수강기간 1년, 수강료 40%할인(330,000원)

과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

홈페이지 <http://www.epasskorea.com>

상담전화 1600 - 0522

■ 대외무역법의 무역거래의 정의

물품	Goods - 눈에 보이는 유형물, 유체물
유역 (특정의 유역) (서식지)	① 경영상당업 ② 법무관련 서비스업 ③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④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⑤ 디자인 ⑥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⑦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⑧ 운수업 ⑨ 관광진흥법 제3조 제1 항에 따른 관광사 업에 해당하는 업종 ⑩ 그 밖에 지식기반융합 등 수출유망산업 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업종(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 업, 임대업, 광고업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영상·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 한 자료 등은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영상물, 음향·음성물 등) ③ ①과 ②의 집합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품질조건

- (1)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 매수인이 물품을 점검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
- (2) 견본매매(Sales by Sample or Pattern) :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
- (3)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or Type) : 표준품의 품질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
- (4)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 물품의 상표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
- (5)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 기술 설명서, 설계도, 사진 등의 명세서를 기초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
- (6)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 국제적으로 통용된 규격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

■ 수단위에 대한 해설

개수의 표시	• Piece(pcs): 날개로 헤아릴 수 있는 물품 1개 • Dozen(doz): 12 Pieces • Gross: 12 Dozen = 144 Pieces → Small Gross = 10 Dozen = 120 Pieces → Great Gross = 144 Dozen = 1,728 Pieces
용적 (부피)의 표시	• CBM(Cubic Meter m^3 미터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1CBM = RKFH1m × 세로1m × 높이 1m) • CFT(Cubic Feet, ft^3): 야드법에 의한 부피의 단위(1CFT = 가로 1ft × 세로 1ft × 높이 1ft) • BBL(Barrel): 석유 및 종류 등과 같은 액체의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중량 (무게)의 표시	• KG(Kilogram): 1,000 Gram • LB(Libra): 중량 파운드(Pound)의 단위를 말함 → 1 lb = 16 Ounes(oz), 약 0.4535923kg에 해당함. • MT(Metric Ton, Tonne): 1,000kg을 나타내는 무게의 단위를 말함.
톤(ton)의 단위	• LT(Long Ton, English Ton, Gross Ton): 2,204lbs(약 1,016kg) • MT(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 Tonne): 2,204bs(1,000kg) • ST(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2,000lbs(약 907kg) 'Gross Weight': 포장한 상태에서의 '총중량' 'Net Weight': 포장하지 않은 상품의 '순중량'을 말함.
포장단위 (Packing Unit)의 표시	• Container(CNTR): 컨테이너(화물 수송용 상자형 용기) • 컨테이너 ①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②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 • Carton(CTN): 판자를 이용하여 만든 화물 포장용 상자(Box)를 말함. • Pallet(PLT): 지가차용 화물 발판대를 말함. • Bulk Cargo: 포장하지 않은 대량의 화물을 말함.(비포장화물 철광석, 곡물 등에 사용됨 과부중용인조건에서 많이 다루어짐)
중량 측정의 방법	①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포장한 그대로의 중량을 대금 계산 시의 기준으로 삼는 조건으로서 포장용기 등이 일정한 면화 및 소액 등의 상품에 주로 활용 * 액체물품, 밀가루, 면화 등에 사용 ② '순중량 조건(Net Weight Term)': 포장물의 중량을 공제한 순수 중량을 대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조건 *비누, 화장품 등 소매판매 시와 같이 포 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주로 이용이 된다.

■ 운송방식별 분류

-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IT, CIP, DAP, DPU, DDP
-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3) 매도인(수출상)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 FAS, CPT, CIP, DAP, DPU, DDP
→ 운송서류에 'Freight Prepaid' 라고 표기되어야 함
- (4) 매수인(수입상)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 EXW, FCA, FAS, FOB
→ 운송서류에 'Freight Collect' 라고 표기되어야 함

■ 보험가입자별 분류

- (1) 매도인(수출상)이 매수인(수입상)을 위하여 부보하여야 하는 조건: CIF, CIP
- (2) 매도인이 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 CFR, CPT, DAP, DPU, DDP
- (3) 매수인이 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 EXW, FCA, FAS, FOB

■ 위험 이전의 분기점별 분류

- (1) 매도인(수출상)의 위험부담이 출발지(수출지)에서 종료되는 조건 : EXW, FCA, FAS, FOB, CFR, CPT, CIF, CIP
- (2) 매도인(수출상)의 위험부담이 도착지(수입지)에서 종료되는 조건 : DAP, DPU, DDP

■ 결제방법

무신 용장 방식	송금	방식	D/D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M/T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		
			T/T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시기	사전송금	CWO = Cash With Order		
			사후송금	COD	현물상환방식(Cash On Delivery)	
				CAD	서류상환방식(Cash Against Document)	
		O/A		청산계정(Open Account)		
	추심	D/P at sight				
		D/P usance				
		D/A				
신용장 방식	① 일람지급신용장, ② 연지급신용장, ③ 인수신용장, ④ 매입신용장					
기타 금융	팩토링	무신용장방식(D/A 또는 사후송금방식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Account Receivable)을 팩터(Factor)가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출자에게는 전도금지급, 대금회수 보증, 수입자에게는 손쉽게 신용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출금융서비스의 일종이다.				
	포페이팅	포페이팅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의미로 불어에서 유래되었다. 물품 또는 서비스 무역거래에서 환어음, 약속어음과 같은 일련의 신용수단을 포페이팅가 상환청구권 없이, 즉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및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수출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의 예외거래	국내외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제외)
사후보고 (1개월 이내)	-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포함) - 국내외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제외)
사전신고 (한국은행총재)	미화 3천만불 초과
결제방법 및 채권회수 등에 대한 관리	- 외국환은행의 '인정'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 지급·연지급·인수·매입신용장의 비교

신용장 종류	수출지 상대은행	어음발행 요구 여부	어음 종류	취급은행 (수권은행)	배서 여부
지급신용장	예치한 거래은행	어음 미요구 (요구 가능)	일람출급	지정은행	배서 불필요
연지급신용장	예치한 거래은행	어음 미요구	기한부	지정은행	배서 불필요
인수신용장	예치한 거래은행	어음발행요구	기한부	지정은행	배서 불필요
매입신용장	무예치한 거래은행	어음발행요구 (미요구 가능)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원칙적으로 자유	배서 필요

■ 다양한 신용장

[선대신용장] :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품의 선적 전에 미리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익자가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

[회전신용장] : 최초 개설한 신용장이 일정한 조건하에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약정한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

-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견질신용장'을 의미 - 이는 원신용장(Master L/C, Original L/C)의 수익자가 원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당해 물품의 공급상을 수익자로 하여 다시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Baby L/C, sub L/C, Second L/C)을 말한다.
- 다른 하나는 연계무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동시개설 신용장'을 의미

[기탁신용장] : '기탁신용장(Escrow Credit)'이란수입상이 신용장의 개설 시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 당해 신용장의 결제대금을 특정의 은행(개설은행, 매입은행, 제3의 환거래은행 등)에 개설되어 있는 수익자 명의의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둔 것(신용장)을 의미한다.

[토마스 신용장] : '토마스 신용장(Tomas Credit)'은 이미 언급한 연계무역하에서의 백투백 신용장과는 달리 신용장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대음신용장의 개설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장차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의 제출을 조건부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기한부신용장의 종류

Shipper's Usance	수출상(Shipper)이 직접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여 일정 기간 대금결제를 유예하여 주는 방식의 기한부 신용장
Overseas Banker's Usance	해외은행의'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에 의거 수출상에게는 일람불로 즉시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는 'Overseas Banker's Usance'는 개설은행의 해외 예치환거래은행(또는 개설은행의 해외 본지점)이 신용을 공여하여 주는 방식
Domestic Banks's Usance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국내의 은행(개설은행 등)이 인수하여 이 를 할인함으로써 수출상에게는 일람불로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는 일정 기간 수입대금의 결제를 유예하여 주는 방식

■ 기한부어음의 만기일 산정방법

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날로부터 만기가 가산되는 어음이다. 일수에 의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한다. 월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일, 말일을 만기일, 12월30일
일자후 정기출급	① 'At 2 months after draft's date' : 어음지급인의 인수일과 관계없이 만기일이 확정되며 지정일자의 다음 날이 환어음 만기의 가산일이 된다. ② 환어음의 기한과 관련하여 'From', 이는 'After'와 동일한 의미, 따라서 해당 일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만기를 산정 ③ 'B/L date'란 본선적재일자(On board date)'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④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에만 그 발행일자를 의미
확정일출급	환어음에 지급이 이행될 미래의 일자가 기재된 어음이다.

2과목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

■ UCP600 용어정의

-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vises the credit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 은행영업일이라 함은 본 규칙에 따라 업무가 이행되어 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정규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자를 말한다.
-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보통 수출자)

-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 확인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말한다.
- Issuing bank means the bank the issu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 지정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이 사용 가능한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을 말한다.

-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조건, 본 규칙의 적용 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 Honour means
 -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 to accept a bill of exchange("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 결제(honour)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일람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연지급을 확인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 A credit must state the bank with which it is available or whether it is available with any bank. A credit available with a nominated bank is also available with the issuing bank.
-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하거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A credit must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A credit must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도 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 i.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A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will be deemed to b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 i.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대금의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 ii.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a.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A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 ii.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의 장소가 제시를 위한 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에서 의 제시장소는 그 모든 은행의 소재지가 된다. 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아닌 제시장소는 개설은행의 소재지에 그 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Article 10. Amendment 제10조 조건변경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 제38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만약 있다면 확인은행과 수익자의 동의 없이 조건변경(amendment)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경우) 및 수익자 모두의 동의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음
 - 신용장 주요 거래 당사자 :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 [주의] Applicant는 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if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

[조건변경 효력발생 시점]

- 개설은행(issuing bank) : 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가능하게 구속됨 (irrevocably bound)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하여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변경 내용에 취소 불가가능하게 구속됨(irrevocably bound)

확인은행이 신용장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issuing bank에게 알리고, beneficiary한테 통지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함

■ Article 12. Nomination 제12조 지정

- Unless a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an authorization to honour or negotiate does not impose any obligation on that nominated bank to honour or negotiate, except when expressly agreed to by that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인수·지급 또는 매입하기 위한 수권은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은행에게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 환어음을 인수 또는 연지급확약 부담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확약을 선지급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그 지정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Receipt or examination and forwarding of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does not make that nominated bank liable to honour or negotiate, nor does it constitute honour or negotiation.
-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의 수령 또는 심사 및 발송은 인수·지급 또는 매입할 의무를 그 지정은행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인수·지급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지정은행이 지정에 따라 행위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정은행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므로 위 조항상의 행위는 결제 (honour) 또는 매입(negotiation)을 구성하지 않는다.
- A bank that advises an amendment should inform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of any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모든 통고를 통지하여 야 한다.
-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the amendment.
- 조건변경의 부분승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건변경의 거절통고로 본다.

■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서류심사기간- 제시 다음날부터 최장 5 banking days(≠calendar days)]							
- 각 은행은 서류 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가산하여 최장 5은행영업일(5 banking days) 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 - 최장 5은행영업일의 서류심사기간은 다른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촉박하거나 결제 만기가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지정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의 최장 서류심사기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월요일에 서류가 제시된 경우							
제시일					심사기간산정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서류제시	1	2	3	4	×	×	5
만약 신용장 유효기일이 임박하여 5은행영업일 동안 심사할 경우 신용장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사를 위해 5은행영업일을 사용할 수 있다.							

[21일의 법칙]

- 신용장에서 서류제시기일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는 선적 후 21일 또는 유효기일이 종료되는 기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 내에 서류제시장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25조에 해당하는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
- [Tip]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2015, JULY

제시일					심사기간산정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서류제시	1	2	3	4	×	×	5
만약 신용장 유효기일이 임박하여 5은행영업일 동안 심사할 경우 신용장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사를 위해 5은행영업일을 사용할 수 있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2 선적일 7/3~7/23 : 21일간 7/23까지 서류제시해야 함. - 만일 신용장 유효기일이 7/23이전이면 신용장유효기일 이내로 서류제시해야 함 - 규정(ISBP745 규정)운송서류가 아닌 유사운송서류 (Delivery Orde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 또는 사본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7 선적일 7/8~7/28 : 21일간 7/28 서류제시 가능 - 마지막 날이 non-backing day인 토요일이 장유효기일 이내로 서류제시해야 함 7/30 월요일까지 서류제시 가능							

■ Article 20. Bill of Lading 제20조(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선하증권에 사전운송수단(pre-carriage)이 없는 경우 본선적재부기 필요 없음
- 선하증권에 사전운송수단(Pre-carriage)이 표시된 경우 일자, 선박명, 선적항이 표시된 본선적재부기 필요

구분	사전운송수단(pre-carriage) 표시	본선적재부기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없는 경우	일자 표시
	표시된 경우	일자, 선박명, 선적항 표시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없는 경우	필요 없음
	표시된 경우	일자, 선박명, 선적항 표시

- ※ pre-carriage : by truck or rail 등
- ※ 수탁지에 선적항과 동일 또는 다른 장소 표시 여부와 상관없다.

[부기내용에 따른 구분]

- 수취식(또는 선적날짜 없음)
 - 선적일자가 표시된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 필요
- 선박명에 Intended가 있는 경우
 - 선적일자, ② 선박명이 표시된 본선적재부기 필요
- 선적항 없음 또는 Intended가 있는 경우
 - 선적일자, ② 선박명, ③ 선적항이 표시된 본선적재부기 필요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WB)
유가증권	단순 운송화물 수취증
수하인을 지시식(to order of EPASS COMPANY)과 기명식(to EPASS COMPANY)으로 기재 가능	수하인을 기명식(to EPASS COMPANY)으 로만 기재
지시식일 경우 배서나교부에 의해서 권리양도 가능	배서나 교부에 의해 양도할수 없음

선하증권과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SWB은 선하증권을 대체하지 못함

■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제28조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

[보험담보산정]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담보비용/금액
- (신용장에서 보험담보 요구 없을 경우)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의 110%
- (CIF 또는 CIP 가격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요구된 결제(honour) 또는 매입(negotiation) 금액
 - 송장(invoice) 에 표시된 물품의 총가액
(할인, 선지급이 있는 경우 송장치로 부보비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총가 치로 부보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ISBP745 규정)